의안번호	-	제 255 호
의 경	201	l5년 월 일
연월 일	1	(제 회)

#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					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2일					

##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 안 번 호 255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2.

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 □ 출연목적

○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재단법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
### □ 출연 예정액 : 3,192,000천원(도비 100%)

○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3조2항

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4항

○ 산출근거 :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2,560,000천원

특별연구조직 운영 632,000천원

※ 증가내역(442백만원) : 공공투자분석센터 172백만원 + 시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증액 160 + 2015년 상반기 인력충원(4명) 인건비 110

### □ **출연계획**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15년	2016년	증감	
(기준보조율)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(C)	(D=C-A)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1	3,192,000	442,000

## ① 출자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정책기획관실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정책관리팀	박은상	김연준	김홍주	2133

기 관 명	충북발전연구원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> <li>○ 원 장 : 정초시 (*재단법인)</li> <li>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</li> <li>(조직인원) 1실, 3부, 1과, 2분원 / 정원 39명, 현원 31명</li> <li>(주요기능) 지역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</li> </ul>							
출자:출연 사 업 비	출연 예정금액: 3,192,000천원(도비 3,192,000천원)         이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      (단위:천원)         구 분 (기준보조율)       2015년 (C)       증감* (D=C-A)         도비(100%)       2,750,000       2,750,000       -       3,192,000       442,000         * 전년대비 증감내역(442백만원 증)       -      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강화(350→522) / - 시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증액(160)         - 2015 상반기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(4명/110백만원)							
출자:출연 필 요 성	○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, 법적근거 미비로 시군 출연금 미편성,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, ○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							
근거·법령	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3조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 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4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 경비를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							
지도감독 부서 <b>의</b> 견 (총 평)	<ul> <li>○ 충북발전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</li> <li>○ 충북 씽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</li> <li>○ 특히, 2016년도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충북발전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수행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</li> </ul>							
첨부자료	<ol> <li>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</li> <li>출연기관 현황</li> <li>출연 사업계획서</li> </ol>							

### □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####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2014 경영평가 결과 : "나" 등급(89.5점)
  - 리더십, 책임경영, 경영시스템(인사, 재무, 제도관리 등) 분야에서 경영혁신 노력과 경영전략. 재무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  - ☞ 연구과제 신설, 4%경제기획단, 중국연구센터, 환경총량연구팀 구성, 시군정책 자문단 운영, 연구인력 신규채용, 평가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중
  - ☞ 또한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매달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연말에 집중된 사업비 지출을 개선토록 노력중

###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
- 특히, 2016년도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, 시군 출연금 삭감,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이 금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- 충북발전연구원의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강화 더불어,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금년대비 출연규모를 상향하여 출연하는 것이 필요함

#### ③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구 분	2015년		전년대비		
	(C)	기관 요구액(A)	실과 산정액(B)	증감(B-A)	증감액 (B-C)
출연금	2,750,000	3,412,000	3,192,000	△220,000	442,000

####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	출연의	유사	사업방식	사업의	투자대비	재원분담
명확성	타당성	중복성	효율성	시급성	효과성	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## 1 − 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자치			한 법률」	전화번호 : 043-220-1141					
	「충북발전	型色子等	현 준영	! 등에 -	산안 소	-데」		홈페이지 : www.cri.re.kr		
주요연혁	- 1990.05.1 - 1994.12.1 - 2011.03.1	27. 충분	¦개발연	구원 명기	칭변경		형태 출연)	출연기관		
인원현황		계			 정·	 규직		비정규직		
('14.12.31. 현원기준)		71 명				27 명		44명		
	이사장	0]	00	충청북도기	시사	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정	00	충청북도	행정부기	<b>시</b> 사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김	00	충청북도	기획관리	<b>의실장</b>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이	00	충청북도	경제통성	상국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조	.00	충청북도	균형건설	설국장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정	00	신한은행	충북지역	<sup>벽본부장</sup>		재임기간		
	당연직이	사 정	00	충북발전약	연구원장	•		재임기간		
	선임직이	사 노	.00	청주상공화	회의소 호	회장		2013. 04. 03 - 2016. 04. 02		
0) 0)	선임직이	사 손	00	서원대학교	고 총장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임 원	선임직이	사 한	00	충북지역개발회 회장	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('14.12.31	선임직이	사 남	00	충북참여	가치시민연대 공동대표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기준)	선임직이	사 이	00	충북여성	단체협의회장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	사 안	00	청풍로펌 변호사	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					연구원 대표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	선임직이사 주○○			교 산업	공학과 교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	사 이	00	충북대학.	교 행정학과 교수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선임직이	사 백	00	영동대학:	교 교수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	
	선임직이	사 정	00	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	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	당연직 감	사 박	00	충청북도	정책기	획관		재임기간		
	선임직 감		00	공인회계/	사			2014. 07. 23 - 2017. 07. 22		
주요기능	- 도정 전 - 지속가 - 국내・오	능한 지	]역발전	전 및 지	방행정	발전에	대한 조	수립 사연구 의 수집 및 제공		
자본금 <sup>*</sup> (단위:백만	i」 만원)		10,020		) H	출자・출약 단위:백민	면액 :원)	8,720		
최근3년간	연도	2013	2014	2015	ᆀᅸ	구현황	자산	12,240		
예산 현황	예산액 <sup>2」</sup>	7,155 (특별회계 포함)	3,204	4,332	(백	만원)	부채	3,011		
(단위:백만원)	지자체 지원액 <sup>3</sup>	1,733	2,000	2,750	14.12	2.31기준	자본 <sup>1</sup>	9,229		
경영성과		총수	.이	•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(단위:백만원) '14.12.31기준		6,47	72			6,576		△104		

- 1」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- 2」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- 3」 해당 기관 예산액(2」 번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## ①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지원	그ㅂ	출자	-
주관부서	부서 정책기획관실		출연	3,192,000천원(도비)

### □ 목적 및 필요성

-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도정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지역발전 견인 정책개발

### □ 출연개요

○ 사 업 명 :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

○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
○ 출연금액: 3,192,000천원(도비 100%)

○ 주요내용 :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지원

○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3조2항

「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2조4항

### □ 산출기초

○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2,560,000천원

특별연구조직 운영632,000천원

### 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
출연금	12,783	500	1,600	1,300	1,300	1,600	1,733	2,000	2,750

### □ 기대효과

-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
- 도정 및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

### 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운영비 부족으로,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수탁사업 치중 우려
- 정책대안 제시 등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한계

#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 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### 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 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- 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- 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-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 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전문개정 2011.5.30.>

- □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
- 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충북발전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발전연구원 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<개정 2011. 6. 10.>
  - 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·군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과 그 외의 출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-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